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화재대응능력 평가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단, 신입 교육과정의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지험"은 화재대응 능력평가에 필요한 시험으로 제1차 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란 화재대응능력 평가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의결 및 평가기관의 지정 등을 총괄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3. "평가기관"이란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로서 평가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준 요건을 구비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을 말한다.
4. 삭제

제2장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

제4조(설치) 화재대응능력 평가지험을 위한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정책국에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의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 20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119대응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소방학교장

2.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

3. 지방소방학교의 장

4. 화재진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화재진압관련 기관·단체·교육기관의 임원·교수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⑧ 위원장은 위원이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교육운영 분과위원회
2. 평가시험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평가기관의 심의·지정에 관한 사항

2. 화재대응능력 교육과정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 등급별 평가종목 및 평가 세부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화재대응조사과 대응전략계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간부 중에서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장 평가기관

제10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교육운영) ①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방학교 및 소방교육대는 별표 3에 따른 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평가업무 등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4. 교육시설(시설 및 기자재 등) 현황

5. 그 밖의 교육운영 및 평가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장비·시설기준 및 구비서류 등 요건을 검토하여 평가기관을 심의·지정하여야 하며, 지정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화재대응능력 평가운영 교육내용의 일부를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기관 지정의 취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장비·시설기준이 요건에 미달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운영을 한 경우

3. 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제9조제1항의 교육운영계획과 상이한 교육운영으로 3회 이상 시정 권고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이 훈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4장 시험공고 및 접수

제12조(응시자격) 화재대응능력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화재대응능력 2급
 - 가. 삭제
 - 나.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13조(시험방법) ① 평가시험은 평가기관의 장이 시·도 소방본부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정할 수 있다.

- ② 평가기관이 평가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장소·방법·과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평가시험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평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14조(응시원서 접수) ① 평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 1호서식에 따른 화재대응능력 평가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수료증

2. 재직증명서

② 수험표의 발부 등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5조(시험장소) 응시 지원자의 해당지역 평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필기시험

제16조(시험의 종류) 등급별 시험의 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필기시험은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합격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은 70점 이상, 1급은 80점 이상의 시험점수를 득한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출제 및 편집) ① 시험문제는 중앙소방학교장이 출제 및 편집하되, 중앙소방학교장이 관리하는 문제은행에서 각 평가기관의장이 출제 및 편집한다.

- ② 1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50%를 출제하고 비공개 문제에서 50%를 출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2급 필기시험은 사전 공개된 문제은행에서 100% 출제한다.
- ③ 그 밖에 문제 출제 및 편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한다.
- ④ 출제 및 편집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중앙소방학교장은 문제의 예시 및 문제은행의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시험의 실시) ① 필기시험은 평가기관에서 등급별로 실시한다(전자시험을 포함한다).

- ② 시험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소방학교장이 정하며 각 평가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하며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 ④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 및 감독관에게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채점관리) ① 채점은 평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채점관’이라 한다)가 행하며, 채점관으로 지정된 자는 별표 4의 채점관 준수사항을 엄수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도모한다.

- ② 채점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출제 문제지 및 답안지는 시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보관한다.

제6장 실기시험

제21조(평가방법) 실기시험은 개별 또는 조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화재대응능력 2급은 평가항목별 60점 이상, 1급은 평가종목별 70점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2조(응시대상) ①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2년 내의 기간 동안에 실기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2년의 기준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원서접수일까지로 한다.

제23조(평가종목 및 출제) ① 평가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별표 1의 화재대응능력 2급은 10개 종목을 평가한다.
2. 별표 2의 화재대응능력 1급은 7개 종목을 평가한다.

② 실기시험은 소방청장이 승인한 「화재대응능력 평가 교범」에 수록된 등급별 실기평가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기평가표를 변경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시험의 실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실기시험 평가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화재진화사 자격취득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받은 사람
2. 각 소방학교 교관 등 관련 전문가

- ② 평가관은 화재대응능력 실기평가표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종목별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③ 평가관의 구성과 실기시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 ④ 중앙소방학교장은 평가기관이 없는 시·도에서 실기평가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시험 실시를 요청할 경우 출장평가 할 수 있다.
- ⑤ 평가기관의 장은 시험에 참여하는 평가관, 감독관 및 운영요원에게는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중앙소방학교장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각 평가기관별 교차 감독관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차감독관에 대한 수당은 시험을 실시하는 평가기관에서 지급한다.

제7장 합격자 발표

제25조(합격자 결정) 평가기관의 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고 합격자 명단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격자 발표)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최종합격자 발표를 시험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다.

- ② 최종합격자 명단은 응시지역의 평가기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제8장 평가 인증서 교부

- 제27조(평가 인증서 교부)** ① 중앙소방학교장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평가등급에 따라 별지 5호서식의 화재대응능력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6호서식의 발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인증서는 시·도 소방본부 또는 평가기관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이 합격한 사람에게 직접 수여한다.
- ③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화재진화사 자격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사후 관리

- 제28조(사후관리)** ① 소방청장은 평가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기관의 운영실태·교육실시내용·교육효과 및 인증시험 실시 상황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평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의 교육·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기관의 점검·평가결과가 부실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평가기관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화재진화사 자격 취득자 및 화재대응능력 인증 취득자를 화재진압부서에 우선 배치해야 하며, 화재진압분야 교육·훈련 교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9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화재대응능력 2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재직 중인(1년 이상) 소방공무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70점 이상
실기시험	10개 평가항목	평가 종목별 60점(백분율)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10개)
기본화재 진압기술	① 공기호흡기 장착 및 비상호흡법 ②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③ 소방펌프차 조작 ④ 로프매듭법(기구묶기) ⑤ 동력절단기 조작 ⑥ 송풍기 조작 ⑦ 관창조작 및 주수기법 ⑧ 사다리설치 및 등반 ⑨ 요구조자 검색 및 구조 ⑩ 화재진압 4인조법

[별표 2]

등급별(화재대응능력 1급) 평가 기준(제16조 관련)

■ 응시대상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교육기관에서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방 법	합격 결정기준
필기시험	객관식 4지선다형 (50문항)	80점 이상
실기시험	7개 평가종목	평가 종목별 70점(백분율) 이상

※ 1차(필기)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 실기평가 종목

평가분야	평 가 종 목 (7개)
전문화재 진압기술	①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역량 평가 ② 저층건물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③ 고층건물 화재진압 및 연결송수관점령 ④ 지하층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⑤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⑥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⑦ 위험물(유류) 화재진압

※ 화재대응능력 1급 수행 역량평가를 합격해야만 다음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별표 3]

평가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시설기준(제10조 관련)

○ 장비기준

구 분	공기호흡기조작 및 사다리조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등 (1·2급 화재대응능력)			
평 가 기 관 장 비 기 준	로 프	일반구조로프	소방자동차	펌프차(4인승 이상)		
	공기호흡기 세트	45분사용 이상 (용적 6.2L 이상)	통신설비	무선통신기기 공중전력 5W 이하 (10명당 1개 이상)		
사 다 리	마 네 킨	압력계 및 점멸등 경보음 보조마스크연결 가능	소방호스	40mm, 65mm (2명당 1개 이상)		
			송배풍기	일반 송배풍기 (20명당 1개 이상)		
동 력 절 단 기	전 장 시 7M 이 상 복 식 사 다 리 (10명당 1개 이상)	중층화재	자동차화재	엔진식 (10명당 1개 이상)		
			화학보호복	3층 이상의 화재진압 훈련장		
승 용 차 (중형이상) (30명당 1개 이상)	25kg, 50kg (10명당 각각 1개 이상)			열화상카메라 (20명당 1개 이상)		
				레벨A (10명당 1개 이상)		
개 인 지 참	소방보호구(방화복,헬멧, 안전화, 장갑 등) 및 활동복, 활동화, 활동모(소방공무원 복제)					
	방화복	아라미드 90% 이상사용	개인로프	8mm 7m이하 구조용 로프	방열복	'KFI 인증 이상
헬 멧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안 전 화		KFI 인증 이상				
		KFI 인증 이상				
장 갑		KFI 인증 이상				

○ 시설기준

구분	공기호흡기 조작 및 사다리 조법	규격
시설기준	공기호흡기 조작 훈련장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사다리 조작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3m이상
	소방활동장비 및 중층화재진압	규격
	수관조작(연장 및 회수) 훈련장	가로 30m이상, 세로 20m이상 공간 확보
	중층화재진압 훈련장	3층 이상의 높이 10m이상, 길이 20m이상
	특수화재진압	규격
	유류 및 가스 훈련장	가로 3m이상, 높이 : 2m이상, 가상 유류탱크 시설
	차량 화재 훈련장	훈련 시 폐차이용 화재를 재현 할 수 있는 공간 가로 7m이상, 세로 5m이상
	고층건물 화재진압 훈련장	4층(최상층 포함) 이상의 높이 13m이상, 길이 20m이상
	농연탈출 훈련장	진입 후 이동거리가 20m이상 탈출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 중앙(지방)소방학교, 교육대 훈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 지정운영
- 훈련장 등 시설물 부족 시 외부 위탁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장비의 성능(규격) 한계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의 제5조 소방활동장비 기준 적용

[별표 4]

채점관 준수사항(제20조 관련)

1. 채점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본인이 채점관임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2. 채점은 모범 답안에 의거 적색(싸인펜, 구리스펜) 필기구로 채점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객관식 답안은 컴퓨터 리드기로 채점하여야 한다.
3. 채점은 오답만을 가려 사전으로 표시한다.
4. 채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안은 무효로 한다.
 - 가. 컴퓨터 수정 싸인펜을 사용하지 않은 답안
 - 나. 표기한 해답을 긁거나 수정액 등으로 정정했을 때
 - 다.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했을 때
 - 라. "●"표 이외의 표기를 하여 컴퓨터가 판독하지 못할 때
 - 마. 답안지에 정답 이외의 이상한 표기를 한때
 - 바. 감독관 확인이 없는 답안
5. 채점이 완료되면 모범 답안과 채점 답안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한다.
6. 채점 후 누구에게도 득점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절) (취) (선)

210mm × 297mm [백상지(150g/㎡)]

●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2.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지참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표를 분실한 때에는 사진(원서에 첨부한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이어야 합니다) 2매를 지참하여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 시험시작 30분전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을 놓고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며,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 설립 목적				
⑥ 설립 연월일				
⑦ 인증업무의 범위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 생략) 1. 평가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2.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 장비, 교 수요원 확보 등)				

평가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대표자:

4. 소재지:

5. 평가업무의 범위: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재대응능력 평가위원장 인

화재대응능력 평가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일련 번호	발급일자	지 정 기 관				지 정 내 역		비고
		기관·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유효기간	지정조건	

화재 대응능력 2급

Fire-fighter II

등록번호 : 제 증양 0000-0000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시험명 :

합격일자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청 장 (직인)
National Fire Agency

화재 대응능력 1급

Fire-fighter I

등록번호 : 제 중앙 0000-0000호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시험명 :

합격일자 :

「화재대응능력 평가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00호)에
의거 위와 같이 화재대응능력 인증을 취득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
립니다.

발급일자 : 2000. 00. 00.

소 방 청 장 (직인)

National Fire Agency

화재대응능력 인증서 발급대장

인증번호	인증등급	발급일자	수료자 인적사항				인증시험 합격일	비고
			성명	(한자)	생년월일	소속기관		